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단 -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1.8. .
공개여부	

대외협력팀장	전국체전기획단장	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부지사	도 지 사

협 조		
	복지건강국장	
	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식품의약과장	구조구급과장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

다시뛰자 경북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목 차

Ⅰ. 방역 기본방향 ····· 1
Ⅱ. 대회운영 기본지침 ····· 1
Ⅲ.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 · 운영 ····· 2
Ⅳ. 「코로나19 대응 TF팀」 업무 ····· 4
Ⅴ. 세부운영방침 ····· 6
1. 확진자, 밀접접촉자 이송관리
2. PCR검사
3. 경기장 안전관리
4. 경기 전·후 조치사항
Ⅵ. 방역관리 프로토콜 ····· 11
1. 방역관리 체계도
2. 방역절차
3.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상황 대응
4. 대회부문별 코로나19 조치사항
Ⅶ. 생활운영 방침 ····· 16
1. 개인위생
2. 숙소
3. 식사
Ⅷ. 추진경과 ····· 17
Ⅸ. 향후계획 ····· 17
Ⅹ. 협조사항 ····· 17

[붙임]
1.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 18
2. 대회기간 참가선수단 규모 추계 ····· 19
3. 경기장별 참가선수단 규모 ····· 20
4.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황 ····· 23
5.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코로나19대응TF팀 비상연락망 ····· 25
6.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 29
7.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문 ····· 30
8. 방역지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 32
9. 2차 검사 문진표 ····· 33

[참고]
1.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현황 ····· 34
2. 감염병환자 격리병원 및 관리시설 현황 ····· 37
3.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38
4. 출입자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 39
5. 코로나19 방역단계 안내 공문 ····· 40
6. 코로나19 대응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 ····· 43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19

2021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

○ 대회 관계기관 간의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으로 참가자 안전 확보 및 원활한 대회운영 도모

○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준비·개최기간 중 대응을 위한 방침 마련

※ 대한체육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방역 관련 대회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수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기본사항 준수

Ⅰ 방역 기본방향

○ 선제적 방역단계적용과 철저한 현장방역으로 안전한 대회운영

○ **대회참가자 백신접종현황 수집**으로 **대회기간 중 검사대상자 집중관리**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이송지침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대회 참여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및 인프라 지원

Ⅱ 대회운영 기본지침

□ **대회운영 기본원칙**

○ **PCR 검사 음성결과(48시간 이내)소지자 대회 참가 가능**

- 발열의심자 자가진단 키트 활용 즉시 검사 및 PCR 검사 동시 진행(시도 운영본부 대응)

○ **코로나19확진자가**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후의 경우**

- 대회 참가 전 PCR검사 시 바이러스가 재검출 되더라도 대회참가 가능

* **참가 시 시·도선수단에 의료기관 확인서 제출 【붙임1】 참조**

○ 신체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철저

- 경기 참가 선수 외 전체 인원 마스크 항시 착용
- 신체적 상호 작용 최소화(포옹, 악수 등 접촉 피하기)

○ 대회 중 확진자 발생 시 해당종목 경기는 즉시 중단되며, 상황 수습 후 해당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협의 후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함

□ **대회장(경기장) 출입 관리 철저**

○ 출입자 전원 사전 등록제(ID카드)로 운영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1

○ 방문자 명부(전자 또는 수기), **출입스티커 배부를 통한 출입 관리**

○ 대회장 출입자 전원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발열 증상 매일 확인

□ **대회장(경기장) 내 거리두기 실천**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 * 3단계 이상 시 이용 금지

○ 모든 좌석은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한 칸 띄어 지정좌석제로 운영(참가 선수, 임원 등)

□ **대회장(경기장) 이동 동선 분리**

○ 출입구 운영 최소화

○ 선수, 관계자 등 이용주체별 동선 구분**(제한 구역은 명확히 통제)**

□ **방역 관리 철저**

○ 대회장과 대회운영에 소요되는 장비 및 기구는 철저하게 방역, 소독 **(1일 2회 이상, 시·군 협조 필요)**

○ 대회장(경기장) 내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공간 마련

□ **코로나19 대응 TF팀을 통해 위기관리 및 소통 전략 수립**

○ 위기 상황 시 메시지의 보급 및 전파에 대한 계획 수립

○ 국내·외 미디어와 SNS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Ⅲ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 · 운영

□ **목 적**

○ 대회기간 중 방역 관리 및 대응 할 조직을 구성하여, 대회 방역관리 주체로서 대회 참가자 전원이 집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을 지원

□ **구 성** : 대한체육회, 경상북도, 시·군, 종목단체, 시도선수단

□ **코로나19대응TF팀 역할**

○ (대회전) 시도선수단 및 종목단체는 사전 방역계획(상황별 현장운영방안 포함) 수립

○ (대회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로 안전한 대회 운영 주도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1

【조직도】

코로나19대응TF팀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회방역매뉴얼 수립
- 위기소통 전략 수립
- 미디어(SNS) 대응 및 모니터링
- 위기상황 발생 시 전파
- 방역 안내 정보 배포

종목단체
- 경기 중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초동대처
- 신고접수(방역담당자·초기발견자)
- 의심환자 발생 시 수송
- 경기장 통제
-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 방역물품 관리
- 출입구 발열체크 관리
- 출입자 수기명부 관리

경상북도
- 지역방역 계획 수립
- 방역 실시 및 점검
- 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 임시격리소 설치
- 지역 내 유관기관 업무협조
- 비상연락망 구축
- 안전요원 지원
- 의료진 지원
- 방역물품 지원 및 관리

시·도 운영본부
- 일과 후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초동대처
- 신고접수(방역담당자·초기발견자)
- 의심환자 발생 시 수송
- 숙소 통제
- 연고지 비상연락망 구축
- 밀접접촉자 발생 시 격리 및 자가격리 장소로 이송

전국체전기획단
- 도 방역관리 매뉴얼 수립
- 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 지역 내 유관기관 업무협조
- 비상연락망 구축
- 안전요원 지원
- 방역물품 지원 및 관리

보건정책과
- 관내 보건소 등 의료협조 체계 구축
- 의료지원 본부 구성 및 운영(구미시 협조)
- 의료지원반 편성 및 운영 (전국체전 71개소, 장애인 체전 36개소)

감염병관리과
-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방역기동반 운영
- 선별진료소 설치
-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병원 현황 모니터링
- PCR검사 시행
- 검역 실시 및 점검
- 이송체계수립

식품의약과
- 숙박·음식점 현황조사
- 숙박·음식점 점검 및 감염병 예방관련 교육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홍보물 부착
- 임시약국 설치 및 운영

* 경상북도 코로나19대응본부
- 본부장 : 행정부지사
- 팀 장 : 각 과장
- 책임관 : 부시장 · 부군수

시·군(13개)
- 자체 방역관리 매뉴얼 수립
- 경기장 방역실시 및 점검
- 안전요원 지원
-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방역물품 지원 및 관리
- 응급후송체계 구축
- 임시격리소 관리

소방본부
- 확진자 발생 시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격리실로 이송
-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이송

도 교육청
-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선수 감염병 예방 홍보·관리

※ 코로나19대응 TF팀 구성 조직 내 **코로나-19증상 신고하는 보건담당자 및 방역담당자 지정**

※ 참가선수단 외 방문객 중 코로나19증상 등 발생 시 방문객의 신원확인 후 코로나19대응 TF팀 내 해당기관에서 신고 접수 처리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Ⅳ 「코로나19 대응 TF팀」 업무

□ 공통사항

1. 시·도, 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2. 대회참가자(선수, 지도자, 임원 등) 중 의심증상자 체전 참가제한
3.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즉시 독립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며 의심환자(확진자) 이송 후 동선이 겹치는 장소 소독 등 후속조치 실시 **【9p Ⅵ.방역관리 프로토콜 참조】**
4. 대회기간 동안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 제한 및 타인과 2미터 거리 유지
5. 최대한 밀폐된 공간과 인파 피하기, 혼자 식사하거나, 거리두면서 식사하기 **【14p Ⅶ. 생활운영 방침 참조】**

□ 대한체육회 · 경상북도(전국체전기획단, 감염병관리과, 시 · 군)

1. 방역당국(중대본), **교육부 및 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회원종목단체 등 **참가자에게 공유**
2. 방역당국의 추가 지침 및 대회 개최 지역 내 환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대회운영에 대한 추가적 조치*** 강구
   * 사전조치 : 대회참가 관련 단체에 대회운영 조치 계획 협조 요청(주무부처 보고 후)
   * 대회운영 : 환자 발생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경기 중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3. 환자발생 지자체(시·군)방역당국 선수 격리 및 이송 등 대응 방안 공유
4. 대회기간 중 **<u>각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운영 및 긴급 검체 지원</u>**

□ 회원종목단체

1. 기존경기장 질서대책반과 동일하게 **'방역담당자'(코로나TF구성원)를 지정**해, 경기장 현장의 감염증 예방교육 및 방역 지원 등 대응체계 강화
   * (역할) 경기장 입구 인력 배치하여 ▲입장인원 전원 마스크착용 안내 ▲출입자 명단작성 및 관리 ▲주기적 환기 등
2. **경기장 입구에 인력을 배치*하여** ▲입장인원 마스크착용 안내 ▲ 명단 작성 및 관리 ▲코로나19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ID카드 확인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선수단 및 관계자) 후 입장 * 13개 시·군, 대구시, 청주시

3. **경기장 내 안전요원 배치**해 마스크 착용 모니터링 및 손세정제 비치
4.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등 게재 및 **수시 안내 방송 실시**
5.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즉시 방역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
6. 일자별 경기 종료 후, 대회본부로 특이사항 보고

□ 시·도선수단

1. 대회참가 48시간 전(2일전) 참가자(선수·지도자·임원 등) 전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시·도선수단'이 경기장 이동(출발) 전 확인
2. 참가 시도선수단의 개최지 이동하는 차량은 **동일 시·도 차량 배차 및 탑승**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종목별로 차량을 나누어 이동하는 것을 권장함
   예시) ◇◇시에서 육상·수영·야구·농구·탁구·레슬링·역도 7종목 참가 시 최소 4대로 이동
   → 육상(구미)/수영·농구(김천)/야구·탁구(포항)/레슬링·역도(안동)
3. **대회참가자*는 참가 기간 중 3일(10월 11일, 14일)에 한번 PCR 검사** 후 다음날 경기 참가 전까지 음성결과를 확인하고 이동해야하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최소 1일 전 PCR 검사 결과 확인)에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직전 PCR검사 결과서(72시간 이내) 확인
   - 검사를 미 실시한 시도선수단(선수 및 임원) 확인되면 해당자는 대회출전 금지 등 향후 불이익 조치함
4. 선수단 격려는 **시도별 최대 2인으로 운영 제한**
5. 대회기간 중 이동시 **대회전용 차량*만 이용** * 대중교통 이용금지
   * **시·도별, 종목별 전용 차량 지원 (배차계획 수립 후 통보 – 경북전국체전기획단)**
6. **'방역담당자'를 지정(코로나TF구성원)**하여 ▲선수단 건강관리(개인위생 수칙 교육 등) 확인 ▲각 시·도 내 참가선수단(학교 및 팀 등)에게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 관련 안내사항 공지 협조
7. 경기장 이동 전 참가자(선수·지도자·임원 등) 중 **발열 및 호흡기 질환 관련 유증상자** 등 의심증상자가 있을 경우 사전 참가 제한 후 방역관리 절차에 따라 조치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V 세부운영방침

1 확진자, 밀접접촉자 이송관리

분 류	조 치 사 항	비 고
확진자	① **확진통보 받는 즉시 방역담당자와 경기위원장에게 보고** • **경기 중단** 및 **경기장 폐쇄 조치**(해당일 포함 최소 2일) - **경기장 방역 및 소독실시** • 선수단 내 **접촉자*** 발생 시 해당 인원 **격리 및 PCR검사 실시** *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따름** ②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소방본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이송 조치 ③ **확진판정 보건소와 거주지 보건소 협의 후 이송 결정**	【비상연락망】 • **종목단체 방역담당자 (000-0000-0000)** • **경기위원장 (000-0000-0000)** • **코로나19대응본부 (054-467-1543)** • **시도운영본부 (054-000-0000)**
밀접* 접촉자 (13p<접촉자 범위>참조)	❶ 통보 받는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이 필요하면 자가용 또는 시도운영본부에서 이송 조치 ❷ PCR검사 실시 • 결과 나올 때 까지 선수단 숙소에 격리 ❸ PCR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 **음성 결과자** 자가 격리 이송 조치**(시도운영본부)** • **확진자는** 지침에 따라 이송 조치**(소방본부)**	【이동방법】 ▷**PCR검사소** • **방역택시 활용 (시·군당 2대)** ▷**음성 결과자** • **시도운영본부에서 조치** ▷**확진자** • **소방본부 구급차이용**

2 PCR검사

○ 기본원칙

– 참가자(선수, 임원, 심판 등 관계자)**전원 대상**

– 백신접종 완료자도 대회 기간 중 PCR검사 실시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 선별진료소 운영

- 운　　영 : 민간업체 위탁
- 설치장소 : 13개소(참가인원* 붙임참조) * 【붙임2】, 【붙임3】

	주 설치장소	경기장 수(참가선수)		비 고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1	포항	9(4,399)	2(596)*추정	사격, 산악 등
2	경주	4(1,161)	3(894)	궁도, 철인3종 등
3	구미	23(8,854)	10(2,980)	검도, 골프, 바둑 등
4	김천	4(1,908)	1(298)	농구, 수영, 테니스 등
5	상주	2(388)	1(298)	볼링, 세팍타크로
6	문경	3(1,059)	2(596)	근대 5종,핀수영 등
7	영주	3(1,127)	2(596)	복싱, 우슈, 자전거 등
8	안동	5(2,210)	4(1,192)	롤러, 레슬링, 볼링 등
9	경산	2(1,419)	2(596)	럭비, 펜싱, 배구 등
10	영천	1(1,008)		태권도
11	의성		1(298)	게이트볼
12	예천	1(549)	1(298)	양궁
13	울진	1(162)	1(298)	요트

* 민간 업체 선정 후 세부내용은 협의 조정 가능

- 검체방법 : 검사대상자는 시군별 **전담선별진료소로 이동·검체**
- 검사방법 : 풀링검사(5명검체 혼합검사 후 양성반응 검체 개별 재검사)

※ PCR검사 비용 : 10억 5,797만원(전국체전 2회 +장애인체전 1회)

- 전국체전(29,711명) : 선수(25,661명), 심판(1,850명), 경기진행(보조)요원(2,200명)
- 장애인체전(11,109명) : 선수(8,965명), 심판(1,000명), 경기진행(보조)요원(1,144명)

※ 종목단체 및 시도운영본부는 PCR검사 안내 검사 완료를 반드시 확인

3 경기장* 안전관리

* 【붙임4】

1. 경기장 방역관리

○ 경기당일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 통제

○ 방역지침 홍보물을 경기장 내 주요장소에 부착(주출입구 등)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 참가자 간 안전거리 확보 : 경기장별 수용인원 거리두기 단계별 축소

○ 경기 전·후 경기장 방역 실시(전문 업체)

○ 경기 종료 후 당일 실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경기시작 전까지 방역완료

2. 방역물품 비치

○ 예비 마스크(KF94)

- 경기장별 100개(참가자·자원봉사자 전원 개인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 주출입구 비치,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

○ 손소독제(**경기장 출입구별 2개씩 비치, 의무적 손 소독 후 입장**)

○ 열화상 감지 카메라 또는 열감지기 배치(**경기장 출입구별 1대**)

○ 체온계(**열화상 감지카메라 고장 시 체온계 사용**)

- 비접촉식 : 경기장별 1개
- 접 촉 식 : 경기장별 1개(2차 검사대)

3. 임시격리실 마련

○ 대상 : 경기당일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등 코로나19가 의심스러운 참가자

○ 임시격리실 마련(**경기장별**)

- 회의실 등 경기진행 위치와 떨어진 장소 마련(**화장실 별도사용 권고**)
- 시설면적 8㎡ 당 1명까지 수용가능(거리두기 2~4단계 기준)
- 좌석 간 간격을 2m이상으로 배치
- 운영요원 등 관리인력(1명) 사전 확보
- **격리대상자(밀접접촉자 등) 발생 시 시도운영본부 또는 방역택시활용**

○ 의심자 등 조치사항

- 일반참가자와 이동 동선을 달리해 임시격리실로 안내
- 의료진의 진료와 의심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 후송 여부 결정

○ 운영요원 안전관리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 전원 마스크·장갑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 가운, 페이스쉴드 추가 착용(**상황 발생 시**)
- 안전 교육 및 검사 전·후 손 소독 철저히 실시

4. 비상연락 체계 구축 【붙임5】

○ 경기장 관련 상황발생 즉시 도 종합상황실(☎054-467-1543~5) 보고

○ 경기장별 방역 및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시도본부, 종목별단체, 시군별)

* **전국체전기획단으로 책임관 명단 통보 협조**

5. 방역택시 운영

○(운영)**시·군별 방역택시 2대씩 지정**

- 감염예방을 위한 차량 격벽 설치 및 방역물품 지원

○(역할)**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이송 지원**

- PCR검사 이동 및 임시 격리소 격리,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지역으로 이송**
- **운행 시 페이스쉴드 장착 또는 KF94마스크 필히 착용**

6.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대회참가 안내

○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의 위한 참가자 안내사항 등**' 게재

4 경기 전·후 조치사항

1. 경기준비 시 조치사항

○ 참가자 중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여부**

○ 경기장 준비상황 점검

- 경기장 주 출입구 최소화
- 참가자 간 안전거리 2m 유지하도록 유도테이프 부착
- 자가문진표 출력 【붙임6】,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문 【붙임7】 부착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 주출입구에 손소독제, 예비 마스크 비치, 책상 준비
- 방역 실시(민간방역 전문업체) 및 화장실 손세정제 비치
- 대기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넓게 배치

2. 경기진행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붙임8】 작성(종목단체)

○ 방역담당자가 참가자 입장준비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기장 입장 금지

○ 방역담당자는 코로나19 근무요령 공지 후 경기장 내 환기 실시

○ 경기장 주출입구 및 2차 검사대 배치

- 참가자입장관리, 열화상감지카메라 모니터링 및 2차 검사 문진표 【붙임9】 배치
- 2차 검사(감염관리요원, 2차 검사요원) 배치
  - 감염관리요원은 열감지기 · 문진표접수 근무 겸임
  - 2차 검사요원은 주출입구에서 문진표 미지참자 문진표 작성 협조

3. 경기 종료 후 조치사항

○ 경기장에서 사용된 모든 폐기물(마스크·장갑·전신보호복·안면보호구 등)은 분리배출 없이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경기 종료 후 경기장은 소독 실시

○ 경기 참가자는 경기종료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VI 방역관리 프로토콜

1 방역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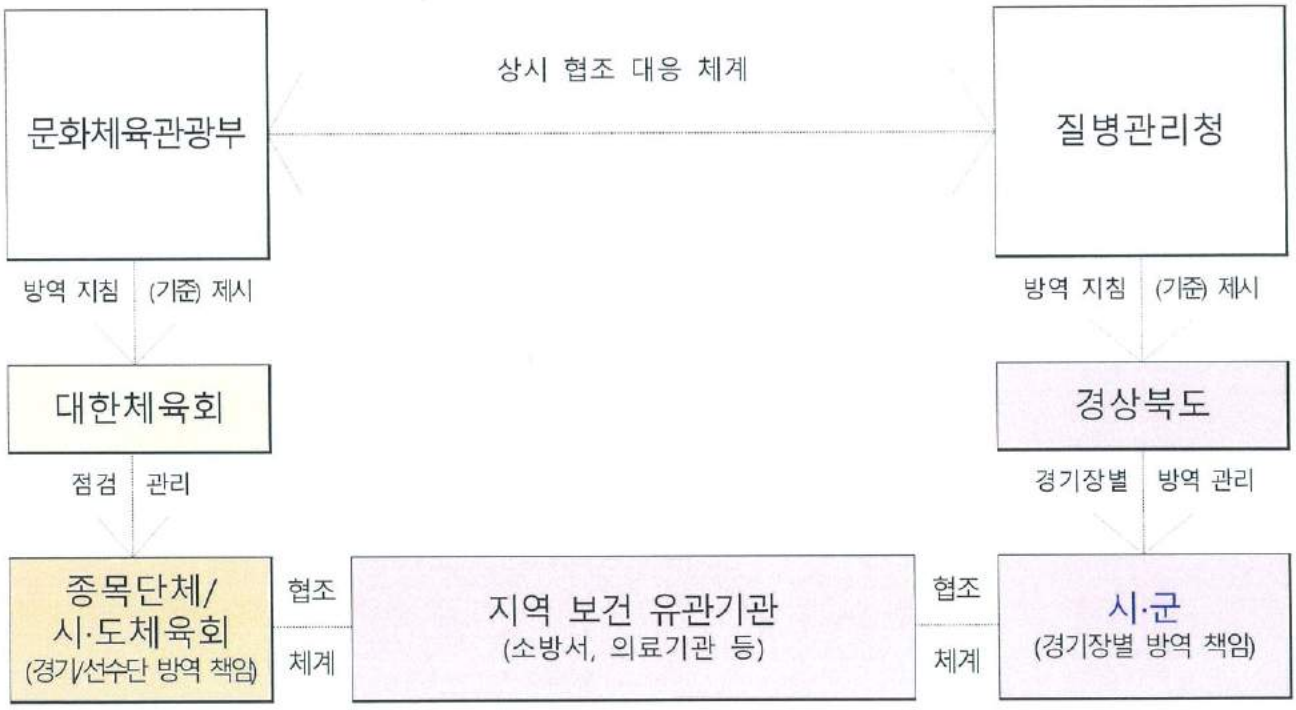

2 방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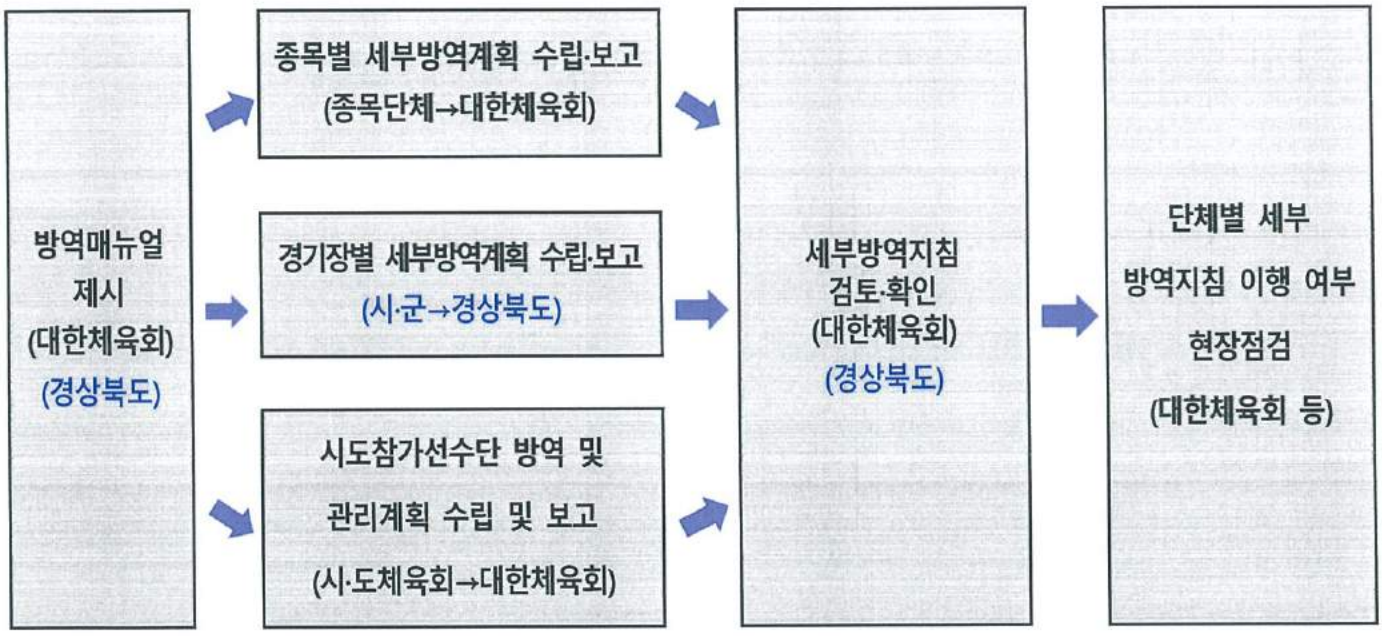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3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상황 대응

1 의심환자 발생 시

절차	행동요령	비고
1	의심환자(37.5도 이상) 신고 접수 ▹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대응TF팀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2	코로나19대응TF팀 내 신고접수자(초동대처 담당자)의 안내로 마스크 착용하고 임시 격리소 이동과 동시에 보건소 등에 즉시 신고	코로나19대응TF팀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3	① 현장 의료진 진료 및 기초 증상점검 < 조치 필수사항 >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추가문진 ▹ 안정 취한 후 체온 재측정 ▹ 최대 10분 간격으로 3회까지 측정 ② 현장 의료진의 진료와 의심자 증상에 따라 선별진료소(보건소) 후송 여부 결정 * 해당 종목 경기장 격리시설로 이동	코로나19대응TF팀 (종목단체) * 경기장 외 코로나19대응 TF팀에서 의료진 파견
4	선별진료소(보건소) 후송 * 결과도출 전까지 숙소격리	코로나19대응TF팀 (시도운영본부)
5	PCR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양성판정) -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 후 밀접접촉자* 확인 후 PCR검사 조치 * 시군구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따름 * 밀접접촉자 시도선수단 비상연락망 활용 자가격리 조치 (시도 선수단 대응) - 해당 경기장(시·군 및 종목단체) 및 숙소 시설 등 방역 및 소독조치	코로나19대응본부 (경상북도) 및 의료기관
6	확진자는 확진판정 보건소와 소재지 보건소와 협의 후 생활치료센터 후속 이송 결정	의료기관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2 확진자 발생 시

< 경기 전 >

○ 경기 전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 제외 후 경기진행**

< 경기 중 >

○ **경기 진행 중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종목 경기 중단 후 후속조치**

(후속조치 1단계) 방문 시설(경기장) 폐쇄(해당일 포함 최소 2일)

- 대회를 중지하고 선수단 숙소 격리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응

(후속조치 2단계) 접촉자 자가 격리(최소 14일)

- 역학조사 결과 선수단 내 접촉자 발생 시 해당 인원만 **자가 격리***, 접촉자로 비분류 시 활동 가능

* 확진자 판정 보건소 및 거주지 보건소 간의 협의 후 접촉자는 시도운영본부 비상연락망 활용 자가격리 장소 협의 및 확인 후 이송 조치(시도운영본부)

< 접촉자범위 예시 >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발생 후 14일간 다음과 같은 접촉이 발생한 자

1)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2)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3)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4)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

※ 본 예시는 WHO의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 범위를 결정

구분	상황별 접촉자
가정, 지역사회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집에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를 직접 돌본 자 – 동거인
교통수단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환자와 2열 이내에서 15분 이상 앉아있었던 자와 환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예; 기차 또는 항공기 승무원)
기타 (예배당, 직장, 학교, 사적모임 등)	– 환자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무른 자 – 환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 접촉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밀폐된 동일 공간에 확진환자와 머무른 자를 접촉자로 관리

* 출처 : Contact trac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10 May 2020)

○ **(후속조치 3단계) 대회(경기) 진행 여부 및 안내**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4 대회 부문별 코로나19 조치사항

□ 대회 참가자

○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48시간 이내)

- 발열 의심자는 '자가 진단 키트' 활용 및 즉시 PCR검사 진행

○ 전자출입명부(QR코드) 또는 080 콜체크 활용

- 질병관리청은 감염경로 추적을 위하여 출입자명부관리 의무화(공공장소)하고 QR코드 명부작성이 불가한 경우 **수기로 명부 비치 의무**

○ 사용 절차

< 전자출입명부(QR코드) >

출입자	주관단체
네이버 또는 카카오 로그인 후	**전자출입부(KI-Pass)보건복지부** 앱 설치
QR체크인 접속	사업자 신규 등록 접속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체크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약관동의 페이지 이동 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중복확인 필수**
휴대전화 인증 **완료** 후	상세사항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첨부** 후 등록
입장을 위한 **QR코드 생성** 완료	휴대번호 본인 인증 체크 후 **"시작하기"** 버튼 누르기
주최기관 측에 보여주기	로그인시 아이디 중복체크 후 비밀번호 2번 입력 후 등록 버튼 (**관계자 ID 추가 가능**)

< 080 콜체크 >

출입자
080 번호로 통화
KT지능망 교환기에 기록저장
기록관리

(전국체전기획단)

KT가입요청(1588-011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공문,담당자신분증사본)

-랜덤으로 번호 발생, 통화당 4.82원

○ 발열검사 실시(선수단 및 대회관계자 포함)

(1, 2차 발열검사_사전검사)

- 선수단, 대회 관계자 전원 사전 발열검사 실시
  - · 1차: 경기 전일 22:00까지 · 2차: 경기 당일 숙소 출발 직전까지
- 경기당일 지도자는 경기감독관에게 이상 유무 알림
-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작 전 선수단 및 관계자 이상 유무를 공유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3차 발열검사_대회장 현장 출입 시)

- 선수단은 경기장 내 진입하여 최종 발열 검사 실시(주출입구)
- 선수단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경기장 출입 시 주출입구에서 발열검사 실시
- **최종 발열검사 통과 인원에게 스티커 부착 (대회 일자별 색상 구분 필요)**

【발열 의심 환자 '**자기진단 키트**' 활용 즉시 검사 진행】

□ 경기장

○ **통제구역 및 이동 동선 설정(경상북도, 종목단체, 시·군)**

- 선수단, 대회 관계자 주차장, 출입구 등 이동·통제구역 및 동선 설정

< 필수 항목 >	
▲ 선수·대회관계자 주차장	▲ 출입 통제구역
▲ 대회관계자 경기장 출입구	▲ 선수단 경기장 출입구
▲ 선수·관계자 이동 동선	▲ 대회관계자 퇴장 동선
▲ 차량 이동 동선	

○ **경기장 구역별 인력운영계획 수립(회원종목단체, 시·군)**

< 필수 운영인력 >

▲ 운영관리감독 : 출입, 검역, 게이트관리 총괄
▲ 통제/안내 : 주차장 출입구 안내 및 통제업무
▲ 경기장 입출입 안내 : 문진표 접수 데이터 관리, 퇴장관리
▲ 검역 : 경기장 출입 검역소 발열체크/스티커 발부, ID 체크

○ **출입관리 운영계획 수립(회원종목단체, 시·군)**

< 운영원칙 >

▲ 대회장 출입구를 선수단, 관계자가 분리사용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 대회장 출입 가능 시간은 평소보다 길게 잡고, 또 출입 시에 간격을 두고 줄을 설 수 있도록 하는 안내요원 배치
  * 사람간 간격을 2m확보(좌우앞뒤)를 권장하며, 최소 1.5m 이상을 유지
▲ 각 출입구에 감염관리 담당요원을 배치

□ 종목별 경기종료

○ 당일 경기를 마친 선수단부터 대회장 퇴장을 허용하고 선수단 마다 퇴장시간을 정하는 등 대회 종료 후 한꺼번에 많은 선수단이 대회장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

○ 대회경기 종료 후 개최지는 경기장 및 주변시설 등 소독 실시

○ 대회에 참여한 대회관계자, 심판, 운영요원 등은 대회 기간부터 기산하여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Ⅶ 생활운영 방침

※2020도쿄올림픽 선수 및 임원 플레이북 참조

1 개인위생

○ 정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 사용

○ 개인건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관리

○ **훈련, 시합, 식사, 음료섭취, 수면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 마스크가 축축해지면 즉시 교체

○ 타인과 **2미터 거리** 유지하며, **신체 상호작용 최소화**

○ 최대한 밀폐된 공간과 인파 피하기

○ 일과 후 도시를 걸어 다니거나 관광지, 상점 등을 방문하지 않음

2 숙소

○ 숙소*는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3단계 시, 전 객실의 3/4 운영)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운영 권장

*예약 완료 후 감염병 관련 점검 및 홍보 지속

○ 일과 후 숙소에서 머물기를 권장하며,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 최소화

○ 개인 방역수칙 철저 및 숙소를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감염병 예방

3 식사

○ 타인과 2미터 떨어져서 식사하거나 혼자 식사가 어려울 시 최대 4인 이내 식사

*테이블간 1m거리두기(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동선 명확화를 위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Ⅷ 추진경과

○ 2021. 2. 24. : 문체부 방문, 방역예산 국비지원·선수단 백신접종 건의

○ 2021. 3. 3. : 대한체육회 방문, 방역예산 국비지원·백신접종 건의

○ 2021. 4. 20. : 기재부 방문, 방역예산 및 의료진 운영 국비지원 건의

○ 2021. 6. 3. : 의료·방역지침 통보 및 시·군별 세부계획수립 요청

○ 2021. 7. 28. : 대한체육회 방역관련 대회운영 매뉴얼 접수

○ 2021. 8. 3. : 전국체전 경기장방역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 2021. 8. 5.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시·도운영부장단 회의 참석

○ 2021. 8. 13. : 구미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방문, 방역대책 보고

○ 2021. 8. 16. :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방역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 2021. 8. 19.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중앙 및 시·도관계관 회의 개최

Ⅸ 향후계획

○ 시·도선수단 백신접종 현황조사 : 2021. 9월초

- 만18세 이상 대회참가자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 시·도별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이송계획 수립 요청

○ 시·군 경기장별 세부방역 매뉴얼 수립 : 2021. 9월중

- 시·군별, 경기일정별, 경기장별 수송대책 마련
- 확진자·밀접접촉자 발생 시 방역·소독·이송체계 점검
- 대회기간 시·군 방역부서 PCR검사 수행능력 분석 및 보완

Ⅹ 협조사항

○ **시도선수단 및 종목단체 사전 방역계획**(상황별 현장운영방안 포함) **수립**

○ 대회 개최 시 **방역지침 및 이행여부 점검·관리**(종목단체, 시도선수단)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1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
Confirmation of Admission · Discharge from the Medical Center(Residential Treatment Center)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date	
시설(기관)명 Name of Medical Center(Residential Treatment Center)	(예시) ○○의료원 또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 (예시)○○ Medical Center(Central Region·International 1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입원(소)일 Admission Date		퇴원(소)일 Discharge Date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We confirm that this person is discharged from the Medical Center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according to meeting the standard of COVID-19 Isolation/Quarantine Release.

발행일: (예시) 2021.○○.○○

△△ 보건소장 (인)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2	대회기간 참가선수단 규모 추계 *2021년 대회참가현황 반영

(단위 : 명)

구분	지역	10.7.(목)	10.8.(금)	10.9.(토)	10.10.(일)	10.11.(월)	10.12.(화)	10.13.(수)	10.14.(목)	비고
1	구미	930	4,020	6,074	7,774	6,729	6,729	5,708	2,624	
2	포항	-	359	1,908	1,908	1,908	1,908	1,723	1,549	
3	경주	-	2,139	4,201	3,993	3,802	2,962	2,867	1,344	
4	김천	-	574	1,059	1,059	781	781	485	-	
5	안동	-	837	1,010	993	993	820	669	669	
6	영주	-	1,419	1,419	1,419	1,419	1,419	1,419	659	
7	영천	-	902	1,127	1,127	1,127	902	902	338	
8	상주	-	465	2,210	2,210	2,210	1,504	1,504	956	
9	문경	-	549	549	549	549	549	549	-	
10	경산	-	-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11	예천	-	278	388	388	110	110	-	-	
12	울진	-	-	162	162	162	162	162	-	
13	대구	-	378	378	378	378	378	378	378	
합계		930	11,920	21,493	22,968	21,176	19,232	17,374	9,525	

※ (주의사항) 종목별 경기참가 선수단 규모를 단순 합산해 탈락자 숫자를 반영하지 못 함*
*탈락인원 관련 통계자료 부존재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3 경기장별 참가선수단 규모

(단위 : 명)

연번	종목	지역	경기장	10.7.(목)	10.8.(금)	10.9.(토)	10.10(일)	10.11(월)	10.12(화)	10.13(수)	10.14(목)
1	럭비	경산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	659	659	659	659	659	659	659
2	펜싱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관	-	760	760	760	760	760	760	-
3	핸드볼	경주	경주 실내체육관	-	669	669	669	669	669	669	669
4	궁도	경주	황성공인 궁도장 (호림정)	-	-	173	173	173	-	-	-
5	철인3종	경주	경주 보문호	-	168	168	-	-	-	-	-
6	당구	경주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	-	-	-	151	151	151	-	-
7	본부임원	구미	구미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	1,506	1,506	1,506	1,506	1,506	1,506	1,506
8	육상 (2개소)	구미	구미시민운동장, 야외 일원	-	-	-	1,700	1,700	1,700	1,700	-
9	축구 (남자16세 이하, 남대)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648	648	648	648	648	648	648	648
10	축구 (남일부)	구미	구포생활체육공원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11	테니스 (일반/대학)	구미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	291	291	291	291	291	291	-
12	배구 (남16세이하부)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체육관	-	-	188	188	188	188	188	-
13	배구 (여19세이하, 여일부)	구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체육관	-	-	292	292	292	292	292	-
14	배구 (대학부, 남일부)	구미	금오공업고등학교 체육관	-	277	277	277	277	277	277	-
15	자전거 (MTB)	구미	구미 천생산성	-	171	-	-	-	-	-	-
16	씨름	구미	경운대 체육관	-	483	483	483	483	483	-	-
17	검도	구미	구미장애인체육관	-	-	538	538	538	538	-	-
18	승마	구미	구미시승마장	-	163	163	163	-	-	-	-
19	배드민턴	구미	박정희체육관 (9.11.~9.16.)	-	-	-	-	-	-	-	-
20	볼링 (일반)	구미	복합스포츠센터	-	-	217	217	217	217	217	
21	볼링 (남고부)	구미	빅히트볼링장	-	-	119	119	119	119	119	
22	볼링 (해외동포)	구미	금오볼링장	-	-	-	-	-	-	-	-
23	골프	구미	구미CC	-	-	-	-	188	188	188	188
24	보디빌딩	구미	강동문화복지회관	-	-	221	221	-	-	-	-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연번	종목	지역	경기장	10.7.(목)	10.8.(금)	10.9.(토)	10.10.(일)	10.11.(월)	10.12.(화)	10.13.(수)	10.14.(목)
25	댄스스포츠	구미	선산체육관	-	-	232	232	-	-	-	-
26	바둑	구미	구미코 대회의실	-	-	260	260	-	-	-	-
27	수상스키	구미	구미시 동락공원 일원 수변경기장	-	199	199	199	-	-	-	-
28	택견	구미	구미대학교 체육관	-	-	158	158	-	-	-	-
29	수영	김천	김천실내수영장	-	-	964	964	964	964	964	964
30	테니스 (고교/해외)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경기장	-	174	174	174	174	174	174	-
31	농구 (일반)	김천	김천실내체육관	-	-	271	271	271	271	271	271
32	농구 (고교)	김천	김철실내보조경기장	-	-	314	314	314	314	314	314
33	스쿼시	김천	김천스쿼시장	-	185	185	185	185	185	-	-
34	사격 (화약총)	대구	대구국제사격장 (10.1.~10.5.)	-	-	-	-	-	-	-	-
35	하키 (고교부)	대구	대구 안심하키경기장	-	378	378	378	378	378	378	378
36	소프트 테니스	문경	문경국제 소프트테니스장	-	-	521	521	521	521	521	-
37	근대5종 (펜싱)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	-	296	296	296	296	296	-	-
38	근대5종 (수영)	문경	국군체육부대 수영장								
39	근대5종 (복합)	문경	국군체육부대 메인스타디움								
40	근대5종 (승마)	문경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41	핀수영	문경	국군체육부대 수영장	-	278	278	278	-	-	-	-
42	볼링 (대학부)	상주	상주월드컵볼링장	-		110	110	110	110	-	-
43	세팍타크로	상주	상주실내체육관(신관)	-	278	278	278	-	-	-	-
44	레슬링	안동	안동체육관	-	-	956	956	956	956	956	956
45	역도	안동	안동대학교 체육관	-	465	465	465	465	465	465	-
46	볼링 (여고부)	안동	안동볼링장	-	-	83	83	83	83	83	-
47	롤러	안동	안동대학교 롤러경기장	-	-	308	308	308	-	-	-
48	카누	안동	안동 낙동강일원	-	-	398	398	398	-	-	-
49	자전거 (트랙)	영주	영주경륜훈련원	-	338	338	338	338	338	338	338
50	자전거 (도로)	영주	영주시 인근도로	-	-	-	-	-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연번	종목	지역	경기장	10.7.(목)	10.8.(금)	10.9.(토)	10.10.(일)	10.11.(월)	10.12.(화)	10.13.(수)	10.14.(목)
51	복싱 (2개소)	영주	영주제일고 체육관, 영주중 체육관	-	564	564	564	564	564	564	-
52	우슈	영주	영주시 생활체육관	-	-	225	225	225	-	-	-
53	태권도	영천	영천 실내체육관	-	-	1,008	1,008	1,008	1,008	1,008	1,008
54	양궁	예천	예천진호국제양궁장	-	549	549	549	549	549	549	-
55	요트	울진	후포 요트경기장	-	-	162	162	162	162	162	-
56	사격 (러닝타겟)	청주	청주종합사격장 (10.1~10.2.)	-	-	-	-	-	-	-	-
57	축구 (여고부,여대부)	포항	포항양덕구장	-	391	391	391	391	391	391	391
58	축구 (여일부)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	-	208	-	208	-	208	-
59	야구,소프트볼 (남고부)	포항	포항생활체육야구장	-	336	336	336	336	336	336	336
60	야구,소프트볼 (남일부)	포항	포항야구장	-	-	302	302	302	302	302	302
61	야구,소프트볼 (여고,여일부)	포항	양덕유소년야구장	-	-	315	315	315	315	315	315
62	탁구	포항	포스코한마당체육관	-	-	565	565	565	565	565	-
63	유도	포항	포항대학교 체육관(평보관)	-	750	750	750	750	750	750	-
64	사격 (공기총)	포항	포항실내사격장	-	303	303	303	303	303	-	-
65	체조 (기계)	포항	만인당체육관	-	200	200	200	-	-	-	-
66	체조(리듬)	포항	포스코교육재단 체육관	-	-	-	-	199	-	-	-
67	조정	포항	포항 형산강 조정경기장	-	-	433	433	433	-	-	-
68	산악	포항	포항 국제클라이밍센터	-	-	239	239	-	-	-	-
69	에어로빅	포항	포스텍 체육관	-	159	159	159	-	-	-	-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4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황

1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지역 (경기장/종목)	종목	종별	경기장
구미 (23/16)	검도	전종별	구미시장애인체육관
	골프	전종별	구미CC
	댄스스포츠	전종별	선산체육관
	바둑	전종별	구미코 대회의실
	배구	남일/남대	금오공고 체육관
		남고부	금오공대 체육관
		여고/여일	구미전자공고체육관
	배드민턴	전종별	박정희체육관
	보디빌딩 (시범)	전종별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볼링	일반	복합스포츠센터
		남고부	빅히트볼링장
		해외동포	금오볼링장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전종별	구미시 낙동강 일원
	승마	전종별	구미시 승마장
	씨름	전종별	경운대 체육관
	육상	트랙/필드	구미시민운동장
		로드레이스	구미시 인근도로
	자전거	MTB	구미시 천생산성
	축구	남고/남대	낙동강체육공원축구장
		해외	동락공원축구장
		남일	구포생활체육공원축구장
	택견	전종별	구미대학교 체육관
	테니스	일반/대학	금오테니스장
포항 (13/9)	산악	전종별	포항인공암벽경기장
	야구소프트볼	고등	포항생활체육야구장
		일반	포항야구장
		소프트볼	양덕유소년야구장
	에어로빅	전종별	포스텍체육관
	유도	전종별	포항대학교체육관(평보관)
	조정	전종별	포항 형산강 일원
	축구 여고/여대	여일	포항종합운동장 축구장
		여고/여대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사격(공기총)	전종별	포항실내사격장
	체조	기계	만인당 체육관
		리듬	포스코교육재단체육관
	탁구	전종별	포스코한마당체육관

지역 (경기장/종목)	종목	종별	경기장
경주 (4/4)	궁도	전종별	황성공원 궁도장
	철인3종	전종별	경주보문단지 일원
	핸드볼	전종별	경주실내체육관
	당구	전종별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
김천 (5/4)	농구	일반부	김천실내체육관
		고등부	김천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수영	전종별	김천실내수영장
	스쿼시	전종별	김천스쿼시장
	테니스	고등/해외	김천종합스포츠타운테니스장
안동 (5/5)	레슬링	전종별	안동체육관
	롤러	전종별	안동대 롤러경기장
	볼링	여고부	안동볼링장
	역도	전종별	안동대학교 체육관
	카누	전종별	안동 낙동강 일원
영주 (5/3)	복싱	전종별	영주제일고등학교 체육관
			영주중학교 체육관
	우슈	전종별	생활체육관
	자전거	트랙	영주경륜훈련원
		도로	영주시 인근도로
영천 (1/1)	태권도	전종별	영천실내체육관
상주 (2/2)	볼링	대학부	상주월드컵볼링장
	세팍타크로	전종별	상주실내체육관신관
문경 (6/3)	근대5종	복합	국군체육부대 페인스타디움
		펜싱	국군체육부대 선승관
		수영	국군체육부대 수영장
		승마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소프트테니스	전종별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판수영	전종별	국군체육부대 수영장
경산 (2/2)	럭비	전종별	경산생활체육공원럭비구장
	펜싱	전종별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관(효성캠퍼스)
예천 (1/1)	양궁	전종별	진호국제양궁장
울진 (1/1)	요트	전종별	후포요트경기장
타 시·도			
대구 (2/2)	사격(화약총)	전종별	대구국제사격장
	하키	전종별	대구안심하키장
충북 (1/1)	사격(라이플)	전종별	청주종합사격장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지역 (경기장/종목)	종 목	참가장애유형					경 기 장	비고
		지체	시각	지적	청각	뇌병변		
구미 (12/10)	골프	√		√			구미장애인파크골프장	확정
		√					구미CC(필드골프)	확정
	댄스스포츠	√	√		√	√	박정희체육관	확정
	럭비	√					구미코 전시장	확정
	볼링	√	√	√	√	√	구미복합스포츠센터	확정
	쇼다운(시범)		√				구미코 전시장	확정
	슬런(시범)	√			√		구미장애인체육관	확정
	육상	√	√	√	√	√	구미 시민운동장	확정
							구미시 인근도로(마라톤)	확정
	테니스	√					금오테니스장	확정
	펜싱	√					예스구미스포츠파크	확정
	사이클	√	√	√	√	√	구미 산동농공단지 일대	확정
포항 (3/3)	골볼		√				오천체육문화타운(포은체육관)	확정
	역도	√	√	√	√		만인당	확정
	배드민턴	√		√	√	√	포항 포스코한마당체육관	확정
경주 (4/3)	당구	√			√		경주 실내체육관	확정
	축구		√	√	√	√	경주시민운동장(청각)	확정
							경주축구공원1~6구장(지적.뇌성.시각)	확정
	트라이애슬론	√					경주 보문단지일원	확정
김천 (1/1)	수영	√	√	√	√	√	김천실내수영장	확정
안동 (4/4)	론볼	√				√	안동재활원 론볼경기장	확정
	보치아	√				√	안동체육관	확정
	유도		√		√		안동초등학교체육관	확정
	카누	√					안동 낙동강 일원	확정
영주 (1/1)	사이클	√	√	√	√	√	영주경륜훈련원(트랙)	확정
상주 (1/1)	농구	√		√			상주실내체육관 신관(휠체어,지적)	확정
문경 (3/2)	탁구	√	√	√	√	√	문경실내체육관	확정
							문경실내배드민턴장	확정
	태권도				√		국군체육부대 선승관	확정
경산 (3/2)	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체육관(효성캠퍼스)	확정
	조정	√	√	√			대구대학교 문천지(수상)	확정
							대구대학교 조정부 정고	확정
예천 (1/1)	양궁	√					진호국제양궁장	확정
울진 (1/1)	요트	√					후포요트경기장	확정
의성 (1/1)	게이트볼	√	√	√	√	√	의성군전천후게이트볼장	확정
대구 (1/1)	사격	√			√		대구국제사격장	확정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5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코로나19대응TF팀 비상연락망

□ (경상북도)

소속	직함	담당자	연락처
전국체전기획단	사무관		054-467-1541
	주무관		054-467-1543

□ (경북체육회)

소속	직함	담당자	연락망(HP☎)
체육진흥본부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무		

□ (전국체전 시·도선수단)

※ 시·도청 보건담당자,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참가 예정인 팀, 선수, 지도자와 협조체계 유지

연번	시도별	소속	정·부	직위	담당자	연락망(HP☎)
1	서울		정			010-△△△△-○○○○
			부			
2	부산		정			
			부			
3	대구		정			
			부			
4	인천		정			
			부			
5	광주		정			
			부			
6	대전		정			
			부			
7	울산		정			
			부			
8	세종		정			
			부			
9	경기		정			
			부			
10	강원		정			
			부			
11	충북		정			
			부			
12	충남		정			
			부			
13	전북		정			
			부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

연번	시도별	소속	정·부	직위	담당자	연락망(HP☎)
14	전남		정			
			부			
15	경북		정			
			부			
16	경남		정			
			부			
17	제주		정			
			부			

□ (전국체전 종목단체) 【방역담당자】

※ 종목별로 경기장이 2개 이상시 지역 거리를 감안해 담당자 2명 이상 지정 가능

구분	종 목	직위	성명	연락망(HP☎)	지역	경기장
1	육상	정		010-▲▲▲▲-◇◇◇◇	구미	
		부				
2	수영	정			김천	
		부				
3	축구	정			포항	
		부				
4	야구소프트볼	정			경산	
		부				
5	테니스	정			대구	
		부				
6	소프트테니스	정			...	
		부				
7	농구	정			.....	
		부				
8	배구	정				
		부				
9	탁구	정				
		부				
10	핸드볼	정				
		부				
11	럭비	정				
		부				
12	자전거	정				
		부				
13	복싱	정				
		부				
14	레슬링	정				
		부				
15	역도	정				
		부				
16	씨름	정				
		부				
17	유도	정				
		부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종 목	직위	성명	연락망(HP☎)	지역	경기장
18	검도	정				
		부				
19	궁도	정				
		부				
20	양궁	정				
		부				
21	사격	정				
		부				
22	승마	정				
		부				
23	체조	정				
		부				
24	하키	정				
		부				
25	펜싱	정				
		부				
26	배드민턴	정				
		부				
27	태권도	정				
		부				
28	조정	정				
		부				
29	볼링	정				
		부				
30	롤러	정				
		부				
31	요트	정				
		부				
32	근대5종	정				
		부				
33	카누	정				
		부				
34	골프	정				
		부				
35	보디빌딩	정				
		부				
36	우슈	정				
		부				
37	핀수영	정				
		부				
38	세팍타크로	정				
		부				
39	철인3종	정				
		부				
40	스쿼시	정				
		부				
41	당구	정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종 목	직위	성명	연락망(HP☎)	지역	경기장
		부				
42	산악	정				
		부				
43	댄스스포츠	정				
		부				
44	바둑	정				
		부				
45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정				
		부				
46	에어로빅·힙합	정				
		부				
47	택견	정				
		부				

□ (13개 시·군) 【방역담당자】

구분	시군별	직위	성명	연락망(HP☎)	지역	경기장
1	구미	정		010-▲▲▲▲-◇◇◇◇	구미	
		부				
2	포항	정			김천	
		부				
3	경주	정			포항	
		부				
4	김천	정			경산	
		부				
5	안동	정			대구	
		부				
6	영주	정			···	
		부				
7	영천	정			·····	
		부				
8	상주	정				
		부				
9	문경	정				
		부				
10	경산	정				
		부				
11	의성	정				
		부				
12	예천	정				
		부				
13	울진	정				
		부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6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코로나19 자가 문진표

본 자가 문진표는 2021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본인 및 다른 참가자 등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문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경기당일 경기장 주출입구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1. 최근 14일 동안 방문(여행 포함)한 국가가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 방문력 있음(국가명:) **[ ] 방문력 없음**

(기간:)

문2. 최근 14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해당 없을시 문3으로)

[ ]발열감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그 밖의 증상 ( )

문3. 질병관리청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당란에 "√" 표시)

[ ] 예 (격리해제일 :) [ ] 아니오

문4. 기타 대회와 관련 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ex) 선별진료소 검사 유무 및 검사 결과, 14일 이내 확진환자 동선 장소 방문 여부, 국내 집단발생 연관 여부 등

위 자가문진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일

소속: **성명:** **(서명)**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7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 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간 **외부인의 경기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경기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참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참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 및 퇴장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참가자는 경기장 입장 전 자가문진표 제출 및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장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경기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경기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참가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기위원장과 방역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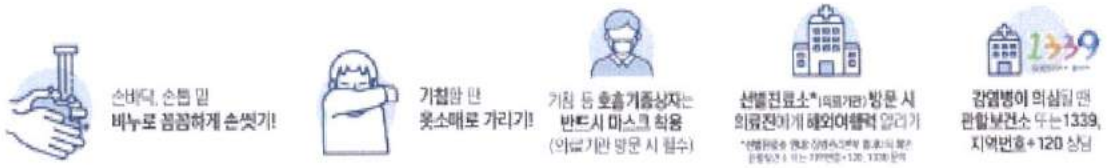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모든 경기장은 경기전·후에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아래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참가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장 입장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자가 문진표를 제출하고 PCR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 증명서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 경기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로 **참가자는 ____부터 시험장 입실 가능**
- 경기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자가 문진표를 직접 출력해 작성 후 당일 제출

※ 자가 문진표 미 제출시 경기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 확진자, 백신 미접종자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경기장 출입구에서 신분증 확인

다.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의심징후가 있는 참가자는 의료반 문진 후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경기장 입장 시 참시자 간 안전거리를 최소 2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기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경기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참가자 신분확인 시에는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기장 환기를 위해 **경기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니 따뜻한 외투를 지참하시고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

사.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는 대회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아. 경기참가 후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8 방역지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항목	확인	기타 참고사항
1	세부 방역지침 마련 및 관계기관 고지 여부		
2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시설 소관부서 - 보건소 - 소방서 - 의료기관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마련 여부(즉시 신고, 격리, 소독, 대회 중지 등)		
4	경기장 출입시 발열 체크 여부		
5	발열 체크 시 체온 37.5도 이상 측정되는 인원에 대한 격리장소 마련 여부		
6	경기장 출입시 방문자 명부(인적사항, 연락처, 체온 등) 작성 여부(QR코드 활용 권장)		
7	경기 중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마련 여부		
8	경기 전·후 선수단의 접촉 최소화를 위한 동선 관리 여부		
9	경기에 임하는 선수단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여부		
10	팀벤치(야구의 경우 덕아웃)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천 여부		
11	경기장 환기 실행 여부		
12	경기중 침을 뱉거나, 물품에 침을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3	부득이 선수단 외에 경기를 관람해야하는 협회 관계자, 언론, 학부모들도 선수단과 같은 절차 준수 여부		
14	개최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 감독 여부		

점검 확인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붙임 9	2차 검사 문진표

2차 검사 문진표

경기장 : _____ 방역담당요원 : _____ (서명)

■ 성명	■ 소속 :

A. 증상(해당항목에 ☑ 하세요)

□ 발열(37.5℃) 이상 (℃)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B. 노출/접촉력(해당항목에 ☑ 하세요) ※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C. 격리대상자 지정여부(해당항목에 ☑ 하세요) ※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

□ 확진환자로 통보된 자
□ 자가격리자로 통보된 자

■ **조치결과**(해당항목에 ☑ 하세요)

□ 경기참가 (A 증상이 경미한 경우) (답변 예시) 증상이 경미한 정도이니 경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격리실 (A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답변 예시) 기침 등 증상이 타 참가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경기 참가가 어렵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1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현황

연번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인근경기장
1	경북	예천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054-650-8011	예천진호양궁장
2	경북	예천	예천권병원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36	054-654-6611	예천진호양궁장
3	경북	안동	안동시보건소	안동시 서동문로 165(북문동58번지)	054-840-5910	안동체육관 안동초등학교 체육관
4	경북	안동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100	안동체육관 안동초등학교 체육관 안동대 롤러경기장 안동대체육관
5	경북	안동	안동성소병원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99	054-850-8114	안동체육관 안동대 롤러경기장 안동대체육관 안동예술의전당 볼링장 안동재활원 론볼경기장
6	경북	안동	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	054-840-0119	낙동강일원(카누)
7	경북	경산	경산중앙병원	경북 경산시 경안로 11	053-715-0119	경산생활체육공원 럭비구장
8	경북	경산	세명병원	경북 경산시 경안로 208	053-819-8500	대구가톨릭대 체육관(효성캠퍼스)
9	경북	경산	경산시보건소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08-5	053-810-6363	대구대학교 문천지 대구대학교 수상정고
10	경북	의성	공생병원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6	054-834-3881	의성전천후게이트볼장
11	경북	의성	의성군보건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054-830-6786	-
12	경북	김천	김천시보건소	경북 김천시 신음동 1284	054-433-4000	김천실내수영장
13	경북	김천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054-420-9300	김천스쿼시장 김천실내체육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14	경북	김천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김천의료원복사	054-429-8114	-
15	경북	울진	울진군보건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3-1250	후포경기장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연번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인근경기장
16	경북	구미	구미보건소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80-7837	복합스포츠센터 빅히트볼링장 경운대체육관 낙동체육공원 구미대학교 체육관
17	경북	구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구미코 대회의실 금오공고 체육관 금오공대 체육관 구미 전자공고체육관 박정희 체육관 동락공원 축구장
18	경북	구미	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054-450-9700	구미시장애인체육관 구미시민운동장 금오볼링장 금오테니스장
19	경북	구미	구미강동병원	경북 구미시 인동20길 46	1599-9669	구미cc 강동문화복지관 구미 천생산성
20	경북	구미	구미시선산 보건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121	054-480-4130	선산체육관 구미시 승마장
21	경북	상주	상주시보건소	경북 상주시 무양동 33-4	054-535-4000	상주월드컵볼링장
22	경북	상주	상주성모병원	경북 상주시 냉림서성길	054-530-7123	상주실내체육관 (신관/구관)
23	경북	상주	상주적십자 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054-534-3501	-
24	경북	포항	포항시남구 보건소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제철동) 161-1 남구보건소	054-270-4004	형산강 조정경기장 포항종합운동장 축구장 만인당 체육관 오천체육문화타운
25	경북	포항	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8	054-275-0005	포항국제클라이밍센터
26	경북	포항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054-260-8019	포항생활체육야구장 포항야구장 포스텍체육관 포스코교육재단체육관 포스코한마당체육관
27	경북	포항	포항시북구 보건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63	054-270-4114	양덕유소년야구장 포항대학교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28	경북	포항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7-0551	포항실내사격장
29	경북	경주	경주시보건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987	054-760-2080	경주보문단지
30	경북	경주	동국대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동대로 87	054-748-9300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 경주축구공원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연번	지역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인근경기장
31	경북	영주	영주시보건소	경북 영주시 휴천동(휴천2동) 466-6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영주생활체육관 영주중
32	경북	영주	영주 적십자병원	영주시 대학로 327	054-630-0100	영주제일고 영주경륜훈련원
33	경북	문경	문경시보건소	경북 문경시 점촌동(점촌1동) 232 문경시보건소	054-550-8168	문경국제정구장
34	경북	문경	문경제일병원	경북 문경시 당교3길 25	054-550-7700	국군체육부대 문경국제정구장 문경실내체육관 문경실내배드민턴장
35	경북	문경	문경중앙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17-18	054-555-2011	-
36	경북	영천	영천시보건소	경북 영천시 옛군청1길 31	054-339-7854	-
37	경북	영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1길 10	054-338-9000	-
38	경북	칠곡	칠곡군보건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054-979-8201	-
39	대구	대구	대구가톨릭 대학교칠곡 가톨릭병원	대구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440	053-320-2500	대구국제사격장
40	대구	대구	대구동구 보건소	대구시 동구 동촌로79	053-662-3225	대구안심하키장
41	충북	청주	청주성모병원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173-19	043-219-8000	청주종합사격장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2 감염병환자 격리병원 및 관리시설 현황

감염병환자 격리병원 지정현황

지정현황

구분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격리 병상수	비고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권태균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180	
국가지정 격리병상	동국대경주병원	서정일	경주시 동대로 87	5	
감염병 전담 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함인석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16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정용구	김천시 모암길 24	20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이윤식	안동시 태사2길 55	143	
	동국대경주병원	서정일	경주시 동대로 87	25	
	영주적십자병원	윤여승	영주시 대학로 327	142	

감염병 관리시설

관리시설

구분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격리 병상수	비고
경북 제3생활치료센터	농협구미교육원	이재희	구미시 선산읍 유학길 82	146	
경북 제4생활치료센터	경상북도소방학교	김용태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	100	
경북 제5생활치료센터	STX리조트	정광호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09	350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3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대한체육회(주최기관)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수기 출입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방문날자,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당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시 이용 제한됨

※ 작성한 내용은 4주기간만 보관 후 폐기되오니, 안심하시고 동참해주세요.

* 해당 동의서는 대회 주최기관이 작성하여 수기명부가 있는 곳에 게시하세요.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4 **출입자 수기출입명부 작성양식** 이용자는 아래 양식만 작성(발열체크, 신분증 제시

날짜	방문 시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이 름 (서명대체)	전화번호	체온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전극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5 코로나-19 방역단계 안내 공문

■ <출처: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1.06.29.,문체부 체육진흥과-2790)2021.06.30>
(적용기간: '21.7.1. 별도 해제 시까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판뉴딜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국내 체육대회 개최 협조 요청

1. 관련문서
   - 체육진흥과-6724(2020.11.5)호
   -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199(2021.6.29)호

2. 위 호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경된 국내 체육대회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국내 체육대회 운영계획(적용 기간 : '21.7.1 ~ 별도 해제 시까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국내 체육대회) * 학생선수 대상 대회 포함 (스포츠 대회, 전국 클럽 대항 대회 등)	*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 집합인원 기준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참여인원 500명 이상 시)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경기 중단)
스포츠 관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함성 등 육성응원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인원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제한에서 제외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70%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경기 중단*

*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무관중 경기 운영이 가능하나, 행사·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지침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 체육대회 경기 및 관람 중단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1 정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6.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목)~별도 안내 시까지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 시행('21.7.1.)기준

***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7.12.~ 4단계 적용 / 비수도권 7.27.~ 3단계 적용**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단계 상향 조정

* 거리두기 단계별 국내체육대회 운영계획(적용기간 : '20.11.7.~별도 해제시까지)

(출처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경북권 50명 미만	* 경북권 50명 이상	* 경북권 100명 이상	* 경북권 200명 이상

(출처 : 문체부_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국내 체육대회 협조요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회	생활방역	지역유행	전국적 유행단계	
국내체육대회 *학생선수 대상대회	대회운영 (참석관중)	대회운영 (참석관중)	실내종목* 경기중단 (무관중 경기) *탁구,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태권도 등	경기중단
스포츠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경기중단

※ 정부의 지침과 별도로 선제적 방역 및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방역단계는 1~2단계, 참석관중은 대회관계자, 선수·지도자·학부모 포함 30%미만** 운영

※ 전국체전 특성상 대단위 밀집형태의 대회임을 감안 참가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대회기간 전 종목 무관중 경기

※ 경북 :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신고·협의 / 시군에 따라 숙박,식사 100이상 금지

2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 특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중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 통한 전파 등
- (접촉전파)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음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참고 6 코로나19 대응관련 법적근거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역학 조사	제18조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은폐 금지**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인력 지원 등 요청 가능
	제35조의2	○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진료 이력 등 거짓진술·고의적 누락, 은폐 금지** ※ (제83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제37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 시설을 갖춘 격리소·요양소를 설치·운영하여 조치가능
	제41조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 ※ (제79조의3)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제43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46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등의 가족·동거인, 발생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
현장 조치	제47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 시 필요한 아래 조치 수행 1.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 4. 오염(의심)물건의 사용·접수·이동 등 금지 또는 폐기 5. 오염 장소 소독조치 등의 명령 6. 일정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 금지, 오물 처리장소 제한 ※ (제79조의3) 제3호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 (제80조) 제1,2,4,5,6호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 조치	제4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행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제80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14호는 제외)에 따른 조치에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제1항제14호에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현장 지휘	제6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 임명가능,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의2	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용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보 제공	제76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
시신의장사 방법	제20조의2	① 감염병 환자(또는 사망 후 감염병병원체 보유 확인된 자)등이 사망하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시설 설치·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사업주의 협조 의무	제41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 의무적 유급휴가) ②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불가 - 유급휴가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불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42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 가능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하는 조치를 할수 있고,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진찰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을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진찰을 받게 할 수 있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함 ※ (제7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한시적 종사 명령	제6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 우려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방역업무 종사 명령 가능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해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손실 보상	제7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 보상해야 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당, 여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역학 조사	제18조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고의 사실 누락·은폐 금지**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인력 지원 등 요청 가능
	제35조의2	○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진료 이력 등 거짓진술·고의적 누락, 은폐 금지** ※ (제83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제37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 시설을 갖춘 격리소·요양소를 설치·운영하여 조치가능
	제41조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음** ※ (제79조의3)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제43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제46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등의 가족·동거인, 발생지역 거주인,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
현장 조치	제47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 시 필요한 아래 조치 수행 1.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통행차단을 위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 의심자에 대한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 4. 오염(의심)물건의 사용·접수·이동 등 금지 또는 폐기 5. 오염 장소 소독조치 등의 명령 6. 일정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 금지, 오물 처리장소 제한 ※ (제79조의3) 제3호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 (제80조) 제1,2,4,5,6호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방	제4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행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조치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 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 이동을 제한 · 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 · 항공기 · 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 하수도 · 우물 · 쓰레기장 · 화장실의 신설 · 개조 · 변경 ·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 ·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 · 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 제2호 · 제6호 · 제8호 ·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 (제80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14호는 제외)에 따른 조치에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제1항제14호에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현장 지휘	제6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필요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 임명가능,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 권한 행사**(통행 제한, 주민 대피, 매개물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 등)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 및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방역관 조치에 협조 ※ (제7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0조의2	①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은 일시적으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조치 가능** ②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정보 제공	제76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등, 출입국관리기록, 그 밖에 이동경로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 가능
시신의장사 방법	제20조의2	① 감염병 환자(또는 사망 후 감염병병원체 보유 확인된 자)등이 사망하면 감염병 차단 및 확산방지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장시설 설치·관리자에게 협조요청,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사업주의 협조	제41조의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면 의무적 유급휴가)

전국체전기획단 / 장경진 / 2021-09-01 20:51:2

구분	법조항	주요 내용
의무		②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불가 - 유급휴가 중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불가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42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 들어가 조사·진찰 가능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하는 조치를 할수 있고,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진찰 가능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을 치료·입원시킬 수 있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진찰을 받게 할 수 있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함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함 ※ (제79조의3)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0.4.5.시행))
한시적 종사 명령	제6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 우려 또는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의 방역업무 종사 명령 가능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간을 정해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손실 보상	제70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 보상해야 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수당, 여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입원 또는 격리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